

■ 인지세 안내

부동산 분양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**공급계약체결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** 합니다.
이점 참고하시어 공급계약체결일 전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 시 지참하시기 바라며,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인지세 과세대상 및 구입처 ※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, 제3호 및 제8조

구분	내용	
과세대상	분양계약서(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)	
발급처	방문 발급	우체국·은행 방문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(사본)
	온라인 발급	전자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

■ 과세문서 및 세액 [인지세법 제3조 제1항]

과세문서 종류	기재금액	인지세액	해당타입
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	1억원 초과초과~10억원 이하	15만원	84㎡A,B,C / 108㎡

※ 상기 과세문서 종류와 금액에 맞는 인지세액 납부 후 전자수입인지 사본을 첨부하여야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.

■ 인지세 연대납부에 따른 환급 안내

인지세법 및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개정에 따라 **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해야** 합니다. 따라서 수분양자께서는 공급계약 체결 시 전자수입인지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인지세액의50%는 **향후 환급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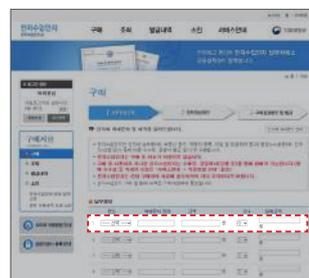
주택형	인지세액	환급예정액
84㎡A,B,C / 108㎡	15만원	7만 5천원

- 인지세액 환급 시 필요서류 : 계약자 명의 통장사본, 계약자 신분증 사본, 전자수입인지 사본
 ※ **공급계약 체결 시 전자수입인지 사본, 계약자 명의 통장사본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환급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.**

■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온라인 구매방법

온라인 이용방법(카드결제, 계좌이체 가능)

1. 전자수입인지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인터넷 검색창 "전자수입인지" 검색
2.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후 비회원 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3. 구매- 납부정보입력
4. 출력



※ 전자수입인지는 1 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재발행 불가)

오프라인 이용방법(신분증 지참, 현금결제만 가능)

1. 우체국, 은행 방문(방문 전 문의 요망)
2.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
3. 전자수입인지 발급